

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6. 9.

문 화 재 청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기관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문화재 환수분야 국고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주의) ...	3
2.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주의)	6
3. 정책연구용역 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주의)	7
4.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사항(시정)	9
5. 물품 운용 및 관리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제도상 개선요구)	10
6. ‘국외소재문화재 긴급매입비’ 연례적 불용에 관한 사항(통보)	11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해외에 유출된 한국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활용·홍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기구 현황은 3실 2해외사무소(정원 26명, 현원 23명)이며, 2016년 예산은 9,465백만원으로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국외소재문화재 반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불법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활용 및 전략 정책 연구 업무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6. 6. 13. ~ 17.까지 총 5일간 감사인력 3명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6. 9. 12.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주 의 요 구

제 목 문화재 환수분야 국고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내 용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는 문화재 환수분야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사업공모를 통해 자체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문화재보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약 170백만 원 /4~6개 기관)를 지원하고 있다.

가. 국고보조금 지원 시 자부담 및 교부 결정 등 관련

‘문화재 환수분야 민간단체 사업 지원’ 공모 시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 시 에도 이를 포함하여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있으나, 사업 확정 통지 시에는 자부담을 포함하지 않고 통지하고 있어 자부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예산 확정 통지 후 같은 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관련 교부조건(지원조건, 이행사항 등) 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나. 사업비관리카드 사용 관련

「사업비관리시스템 운영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52호/2012.5.11.시행)」,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 매뉴얼」에 따르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관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사업정산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민간단체(6개 단체)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집행 액(151,851천 원) 대비 24.21%만 사업비관리카드로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는 경우 자부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시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교부조건을 포함하여 교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 시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내 용

가. 회계연도 초과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회계규정」 제3조(회계연도) 및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는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였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소재 국외소재문화재 역사연구 콘텐츠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자체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인 ‘13.12.31.까지로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13.7.1.~‘14.2.28.로 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등 ‘13~‘16년 기간 중 총 6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시행하였다.

〈표-1〉 회계연도를 초과한 계약현황 [2013~2016]

계약 방법	건 명	계약금액 (천원)	납품기한	용 역 자	주관부서
공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80,190	2013.7.1.~2014.2.28.	○○대학교산학협력단	조사연구실
공개	2014년 국외문화재 DB관리시스템 기능개선	46,000	2013.12.30.~2014.3.31.	(주)★★★미디어	조사연구실
수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1대공사 및 공사일행 자료집 발간	19,000	2013.12.30.~2014.9.30.	◎◎디자인	활용홍보실
수의	국외문화재DB관리시스템 기능개선(출력부문) 용역	49,000	2014.12.30.~2015.4.30.	(주)★★★미디어	조사연구실
수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백서1 제작	19,660	2015.12.23.~2016.9.2.	(주)◆◆	국제협력실
수의	일본민예관 한국문화재 명품선 일본판 제작	19,980	2015.12.29.~2016.4.6.	(주)▼▼▼커뮤니케이션	조사활용실
	6건	233,830			

나. 예정가격 결정 및 예정가격조서 미 작성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회계규정」 제84조(예정가격의 비치)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실태조사보고서(2종) 발간’에 대해 ■■■공방과 계약(계약기간 ‘15.7.7. ~’15.11.30./42,900,000원)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상기의 계약을 추진할 당시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예정가격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계약을 추진하였다.

다. 계약보증금 미 징구 관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회계규정」 제69조(계약보증금)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에이스타워 12층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무실 시설공사’에 대해 (주)☆ 인테리어와 계약(계약기간 ‘14.3.10. ~’14.3.25./5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지급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했으나 이를 징구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계약 체결 시 「국가재정법」, 재단 「회계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 초과계약, 예정가격조서 미 작성, 계약보증금 미 징구 등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주 의 요 구

제 목 정책연구용역 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내 용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103호)」 제49조(정책연구)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개발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할 수 있으며,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 계약상대자 선정 전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3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일본 궁내청 서릉부 한국전적 연구’ 등 16건(631,543천 원)의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며, 연구자를 선정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2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여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정책연구용역 과제 관리지침」에 따라 정책과제 평가위원회를 거쳐 연구자를 결정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환수전문가 국제회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3건은 특정인 만의 기술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하였으나 정책과제 평가위원회만을 거쳐 연구자를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향후 정책연구용역 과제 수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시 정 요 구

제 목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내 용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여비규정」 제11조(항공운임의 지급)는 업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제3항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15년 11월부터 '16년 6월 감사 시점까지 총 26회 46명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여, 123회 총 336,417 항공마일리지가 적립되었으며 2013년 이후 현재까지 824,657 항공마일리지가 누적되었다.

상기와 같이 항공마일리지가 적립되었으면 업무상 국외여행 시 우선 사용하여 여비를 절감하여야 했으나, '15년 11월부터 '16년 6월 감사 시점까지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한 실적이 없으며, '13년 이후 현재까지 총 3회(90,000마일리지/항공권 구입 1회, 좌석등급 1회, 수화물 초과운송 1회)만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국외 공무출장 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도상 개선요구

제 목 물품 운용 및 관리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내 용

국외소재문화재단에서는 2012년 7월 재단 설립 후 물품관리에 대해 별도 운용 기준이 없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 및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27일(재단 물품 관리대장 작성 운영/국외소재문화재재단-4727호) 실시한 자체 재물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품목에 대해 내부결재를 거쳐 자체 파기(탁자 3개)하거나 일부 외장 하드(3개)가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근거 규정이 없어 분실 등에 따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물품관리에 대한 투명성(망실, 매각, 불용, 분실, 정기재물조사 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관련 규정 제정이 필요하나 자체종합감사일(2016.6.17.)까지 내부결재만을 통해 물품을 관리하고 있어 자체적인 「물품관리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물품관리 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통 보

제 목 ‘국외소재문화재 긴급매입비’ 연례적 불용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내 용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가 철거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외국 경매 출품 시 긴급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국외소재문화재 긴급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매입대상 문화재가 없어 2014~2015년까지 사업비 전액(2,955백만 원)이 불용되었다.

국외소재문화재 긴급매입비는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나 매입에 국한하여 예산을 계상 및 편성하고 있어 앞으로도 마땅한 매입 문화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당해 예산에 대한 연례적 불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국외소재문화재 긴급매입비에 대해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